

과업지시서

1. 용역명 :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감리용역

2. 목적 :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감리 시행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.

3. 용역대상

가. 위치 :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산32 외 12필지

나. 면적 : 21.45 ha

4. 감리원 업무내용

가.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관을 보조한다.

나. 감리원은 사업 시행 중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,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.

다.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라.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마.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완료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.

5. 감리 방법

감리원은 감독관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, 사업 기간 중 수시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.

6. 감리 보고서 제출

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.

가. 실시설계사전검토 보고서 :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

나. 착수계검토보고서 : 착수계 검토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

다. 중간감리보고서 : 사업기간 중 수시

※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 작성

라. 예비사업완료검사결과보고서 : 사업진행 90% 시점

마. 감리완료보고서 : 사업완료 시점

7. 수행 기간

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며, 다음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가. 천재지변으로 할 일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
- 나. 발주청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할 일이 중단 또는 할 일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
- 다.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

8. 수행의 원칙

가. 감리수행

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(산림청훈령 제1391호: 2019.2.14.)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
나. 감리원배치

용역수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관련된 별표 11 책임 기술자·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
다.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라. 감리원은 할 일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.

마. 본 할 일 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9. 할일의 세부원칙

가. 감리 업무 착수

- 1)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감리원은 설계도면, 시방서, 산출내역서,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.
 -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 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
 - 조치할 사항 :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, 시행계획 변경

나. 사업 착수계 검토 및 보고

- 1) 감리원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착수계 :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
 - 작업계획서 :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(장비·인력 투입계획 등)

- 작업원 운영계획서 : 지침 별지 제16호서식(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,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)
- 안전관리계획서 : 지침 별지 제17호서식(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, 안전관리 조직편성, 안전관리비사용계획, 안전교육 시행계획, 정기안전 점검계획,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)
-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

다. 사업 시행 단계(감리중간보고 : 사업시행 중 수시)

- 1)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.
 - 감리일지
 -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
- 2)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3) 감리원은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4)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작업방법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·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- 5)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
- 7) 조치할 사항
 -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
 - 중간감리보고서 제출

라. 사업 완료단계(예비사업완료검사)

- 1)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,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(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시점)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검사내용

- 필지별 또는 소반별 사업실행내역(면적)

- 작업 누락, 잘못 실행된 지역은 보완작업 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

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9-966호)를 준용한다.

4)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

○ 표준지의 배치

- 표준지조사 비율

면적의 0.5%이상

- 표준지 크기

100㎡(직방형 또는 반지름 5.67m 원형)

- 표준지 배치

- 조사인력 : 2인 1조(고급기술자 1인 + 초급기술자 1인)

- 표준지표시 : 중앙부 2겹 또는 경계부 4지점

○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표준지 내에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.

- 감리표준지 위치 : GPS좌표 기록

- 제거대상목, 덩굴걷기, 가지치기 등 실행여부

○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

5) 감리표준지배치도 작성

-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

마. 최종감리 완료보고(사업완료 시점)

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(CD), 용역 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0. 감리의 내용

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중간감리보고서

- 임·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
- 소반(표준지)별 작업확인 조서
- 작업실행 사진첩
- 감리일지

나.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

- 필지별 실행내역(임·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)
- 감리 표준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감리준공도면 및 검사시 감리원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GPST랙 도면(사업장확인시 이동동선 확인)
- 완료검사 사진첩

다. 감리완료보고서

- 임·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
-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
- 소반별 작업 확인 조서
-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
- 감리 표준지 조사야장(감리표준지 상세도 첨부)
- 준공도면
- 산림경영이음 등록 확인서

라.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

11. 감리원의 책임한계

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.